

등록번호	감사담당관-9458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9. 5.
공개구분	부분공개(5)

주무관	기술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09/05
현 조			

2024년 문화체육과 지도(특정) 감사 결과 보고



서대문구
감사담당관

I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우리 구 문화·체육 시설물 등 분야에 대한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의 적법성,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등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 등을 시정 및 개선하여 사업성과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코자 함

□ 추진내용

- 감사대상 : 문화체육과
- 감사기간 : 2024. 7. 3.(수) ~ 7. 16.(화) (기간 중 10일)
- 감사범위 : 2021. 1 .1.부터 감사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 감사인원 : 총 4명 (기술감사팀장 외 3명)
- 감사장소 : 감사담당관 내 감사장
- 감사방법 : 서면·실지(현장) 감사 병행

□ 감사중점 사항

- 사업추진 방법 및 설계·입찰·계약 집행의 적정성
- 공사 시공, 설계변경, 정산 및 준공 관련 업무추진 적정성
- 하도급 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추진 적정성
- 관급자재 정산 등 관련 업무추진 적정성
- 하자 점검 및 보수 등 관련 업무추진 적정성
- 기타 사업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 감사대상 현황

- 감사대상 건수 : 총 233건
- 분야별 감사대상 건수

(단위 : 건)

부서	계	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 등
문화체육과	233	75	106	47	5
계	233	75	106	47	5

□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현황

- 지적사항 건수 : 18건, 처분요구 건수 : 20건

(단위 : 건, 천원, 명)

구분	합계						시정(금액)			주의	기관 경고	통보
	처분 건수	신분상 조치	재정상조치 (금액)	기관 경고	시정	통보	소계	환수	기타			
문화체육과	20	3	환수 (4,178)	9	7	1	7	6 (4,178)	1	3	9	1
계	20	3	환수 (4,178)	9	7	1	7	6 (4,178)	1	3	9	1

II 감사 결과

□ 총 평

이번 감사는 부서 특정(지도)감사로서 문화체육과 사업분야 전반 점검을 통한 시정과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의 계약 및 집행 현황 등에 근거하여 1) 사업추진 방법 및 설계·입찰·계약 집행의 적정성 2) 공사 시공, 설계변경, 정산 및 준공 관련 업무추진 적정성 3) 관련 규정 적정 이행 여부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었다.

감사결과 노후된 문화체육시설 개선 및 관광안내센터 설치 공사, 관광홍보 용역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직원 모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었으나, 규정 숙지 미흡, 잘못된 관행답습, 업무소홀로 인한 총 18건의 지적사항 {처분건수: 20건(시정: 7건, 주의: 3건, 기관경고 9건, 통보 1건)}이 확인되었으며, 지적사항 중 다수는 공사의 계약 및 시행, 준공 관련으로 연금·건강 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건설공사 예정가격 과다 설계, 설계변경 정산 부적정, 비목 수량 산출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다.

담당 관련자는 대부분 행정직으로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련 규정 숙지가 미흡하여 업무내용의 전반을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수행을 함으로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을 철저히 이수하도록 유도하여 담당 직원들의 지식습득 및 인식변화를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사업 담당자들에게 사업시행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숙지시키고, 업무진행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Ⅲ 주요 지적사항

□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4. 정산 관련 사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건강보험료 등 납입확인서에 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금액만 확인하여 정산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 교체공사』 외 1건에 대한 사업 준공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확인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 중 사업주 부담금에 대해서만 정산해야 함에도 당초 계약된 요율로 금액을 산출·정산처리함으로서 공사비 1,638천원(제경비포함)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가설울타리 설치」 비목 수량 산출 부적정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 공사■♥ 이설공사」 사업을 시행 및 준공하면서, 원가계산방법으로 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해야 함에도 「가설울타리 이설 및 설치」 비목에 대한 산출 수량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에도 이를 보완 조치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여 수량산출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5,783천원 과다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설계서 수량 92경간, 산출내역서 수량 184경간)

□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공정 원가 적용 부적정

별도 용역으로 시행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단가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가계산서에서 일반관리비 이윤을 중복으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 정비공사(2차)』 사업에 대한 준공 시, 「폐기물 처리 및 운반」 공정에 대한 공사원가를 직접경비로 산출함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에 대한 제비율이 중복 반영되었음에도 최종 준공시까지 정산 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비 84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건설공사 예정가격 과다 설계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②에 따르면, '재료비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ㅎㅈ ■♣★ 구매,설치」 사업에 대한 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잡철물 제작설치(ton당)」 비목의 소요 재료 '산소'에 대한 재료비 산출 시 단위당 가격인(L당) 4.5원을 적용해야함에도, 99.1L에 대한 가격 450원으로

과다 적용하였다. 또한, 「녹막이페인트칠(㎡당)」의 소요재료 ‘녹막이 페인트’ 재료량은 「건설공사품셈 건축 11-2-6」에 따라 1회 0.008L 적용해야함에도 1L로, ‘시너’ 재료량 0.004L→ 1L로 과다 적용하였고, 「2021 건설공사 표준품셈 11-2-6」에 따라 도장공 0.015인을 적용해야 하나 0.15인으로 과다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공사비 15,075천원을 과다 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건설공사 준공검사조서 작성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2조(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 기간)」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준공검사원이 접수되었을때 검사자(공사 감독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 검사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2021~2024년 시행한 공사 「♣♥☉★설치공사」 외 25건에 대해 기성·준공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기성·준공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전검토 절차 미이행

서울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자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대상인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 준공 전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기관별 검토 담당자(우리 구 감사담당관)를 지정하여 검증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ㅎㅅ★ 리모델링 공사 외 2건』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에서 우리 구 감사담당관의 검증 절차를 이행 후 정산 처리해야 하나, 준공 시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정산 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엔지니어링, 디자인 용역 기술자 등급별 자격 요건 미확인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용역수행) ①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 필요한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사○◆◎♣기록화사업 용역」 외 2건의 사업을 시행 및 준공 하면서,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 등을 갖추었는지 적합 여부를 검토 후 용역을 수행해야하나,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을 수행 및 준공처리하여 해당 사업 산출물 등의 품질 확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설계변경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제13장 제7절 1-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능○●♥♣ 리모델링 공사(전기)」 사업을 시행 및 준공하면서, 신규비목 「조명기구 철거」 단가 산출 시 '재사용 철거' 품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일반 철거' 품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986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준공정산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장 제9절 12-가.(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지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ㄱㄱㄱ 설치공사」 사업 준공 시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및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금액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정산해야 함에도 당초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253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용역 감독 업무 소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6746호) 공통편 제3장 3.1.6-라(기타 진단기기의 검·교정)」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측정장비 이외에 안전점검등의 실시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 또는 장비 및 센서 등에 대해서도 「국가교정기관지정 제도운영요령」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근거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구조안전진단 용역」 외 3건에 대한 사업을 시행 및 준공하면서, 현장 재료시험 중 콘크리트 탄산화시험 시 한국인증기구(KOLAS)로부터 승인받은 교정기관의 검·교정을 필하지 않은 장비(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콘크리트의 탄산화 깊이 측정값에 따른 철근 부식 가능성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였음에도 검·교정을 필한 장비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을 승인 처리하는 등 용역 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였다.

□ 하자검사 미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하자검사)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 검사를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 사인물 제작설치」 외 11건 사업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의 존속 기간내에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연2회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사무전결 규정 미준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전결방법)에 따르면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 리모델링 공사(건축)」 외 8건에 대해 계약품의를 처리하면서 전결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검사공무원 기준 미준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따르면 '공사·용역의 기성 및 준공 검사(감독)은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감독)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하고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서대문구 ♣♠♥♣★ 제작 용역」 외 17건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면서 주관과 담당팀장님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7급이하 2명이 준공검사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 설계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출한 산출내역서상(계약단가)의 단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 전시 용역」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를 기존 계약단가로 적용해야 함에도 상향된 단가로 적용하여 설계변경(준공)함에 따라 공사비 1,200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가설건축물관리 부적정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가설건축물)」 사업을 시행 및 준공하면서, 가설건축물 우리 구 건축과 공용건축물 협의를 받은 후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함에도 감사일 종료일까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계약심사 결과 미이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사 규칙』 제7조(심사결과)에 따르면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츠○♥ 조성공사**」 사업 추진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된 조정 금액으로 사업을 발주해야하나 계약심사 전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비 461천원(제비율 포함) 과다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